2026. 10.

싱가포르 컴퓨터 데이터 분석(CDA) 예외 조항 개정 논의 및 의견수렴 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연구팀
홍지희 연구원

1. 저작권법 개정 흐름

1) 논의 배경

싱가포르는 202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 데이터 분석(Computational Data Analysis, 이하 'CDA')에 대한 저작권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저작권법 제244조)은 인공지능(AI) 학습이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 등의 복제 및 공중전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만에 ChatGPT가 출시되면서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입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적용 및 해석상의 쟁점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 CDA 예외 규정이 과연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2) 논의 경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법률아카데미(Singapore Academy of Law, 이하 'SAL')는 2025년 산업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전문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CDA 예외 규정을 생성형 AI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아웃소싱 허용, 계약 위반에 따른 접근 문제의 명문화 등 구체적인 입법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후 싱가포르 법무부와 지식재산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인공지능과 싱가포르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ingapore's Intellectual Property Regime)」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CDA 예외를 비롯하여 저작권 및 특허 분야 전반에 걸친 AI 관련 지식재산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2. SAL 전문가 보고서 주요 내용

SAL 보고서는 현행 CDA 예외 규정의 한계를 짚고,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1) CDA 업무의 제3자 아웃소싱 명문화(제244조(2)(c)·(4)(b))

첫 번째 권고는 CDA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CDA 예외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저작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목적을 '분석 결과의 검증' 또는 '관련 공동 연구'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CDA 업무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현행 조문상 이를 허용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CDA를 목적으로 저작물 등을 복제·이용하는 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본을 제공하여 자신을 대신해 CDA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새롭게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CDA 업무의 외부 위탁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2) 계약 위반 접근의 '적법한 접근' 배제 명문화(제244조(2)(d))

두 번째 권고는 계약을 위반하여 저작물에 접근한 경우 이를 '적법한 접근'에서 배제한다는 점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용약관을 위반한 접근을 '적법한 접근'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약 위반 그 자체를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예시 규정만으로 본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제187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계약조건은 제외하되, 계약을 위반하여 최초 사본에 접근한 경우에는 적법한 접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제244조 본문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제3자 아웃소싱의 허용과 계약 위반 접근의 '적법한 접근' 배제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3) 기타 검토 사항

한편 보고서는 robots.txt나 기계판독 가능한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방식은 CDA 예외의 적용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무효로 하는 제187조와 제도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 그 정합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CDA 단계에서 별도의 기술적 안전장치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침해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침해책임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안전장치는 개발자의 준수 비용과 경쟁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 대국민 의견조회 주요 내용

싱가포르 법무부와 지식재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이번 공개 의견수렴은 AI 학습 단계, AI 배포 및 이용 단계, AI 보조 저작물의 창작성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AI 학습의 명확성과 책임성 강화(Issue A)

첫 번째 쟁점은 AI 학습과 관련하여 현행 CDA 예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술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먼저 CDA 예외의 범위와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CDA 예외가 생성형 AI는 물론 상업적 목적의 CDA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학습이 완료된 이후의 모델 이용이나 산출물 단계에서 발생하는 침해에는 CDA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 밖에 추가적인 명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권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와 관련하여,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 등이 '위법한 접근(unlawful access)'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관련 계약조건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단을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술조치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권리자가 이러한 기술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AI 개발자와 배포자 등이 기술조치를 반영하고 준수하도록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조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주요 질문이다.

2) AI 배포 및 이용 단계의 저작권 위험관리 강화(Issue B)

두 번째 쟁점은 AI 산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각 주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기술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다.

책임 비율과 관련해서는 AI 개발자, 배포자, 최종 이용자 각각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경우에는 책임 비율이 달라져야 하는지도 함께 질문하였다.

침해 위험 최소화를 위한 기술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효과적이면서도 비례적인지, 그리고 사업자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 수준을 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 AI 보조 저작물의 인간 창작성(Issue C)

세 번째 쟁점은 생성형 AI가 관여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생성 전 단계의 프롬프트 작성 및 맥락 설정, 생성 후 단계의 결과물 선택 및 배열, 그리고 생성 후 편집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창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법률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단을 통해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다.

4. SAL 보고서와 정부 의견조회 내용 비교

이번 정부 의견조회에는 SAL 보고서의 권고 사항 중 계약 위반 접근의 명문화에 대한 권고는 반영되고 CDA 업무의 제3자 아웃소싱 허용에 관한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CDA 업무의 제3자 아웃소싱 허용에 관한 권고는 이번 의견조회에 반영되지 않았다. SAL은 제3자에게 CDA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244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 공고문에서는 이를 별도의 의견수렴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

반면 계약 위반 접근의 명문화에 관한 권고는 의견조회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Issue A(II)에서 계약을 위반한 접근을 '적법한 접근'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SAL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다만 이는 개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정부는 계약 위반 등 민사상 위법행위가 '위법한 접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robots.txt 등 기계판독 가능한 지침을 비롯한 AI 관련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공고문 역시 이를 법적 구속력 없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계판독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SAL 보고서의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s://sal.org.sg/wp-content/uploads/2026/01/Reform-of-the-Computational-Data-Analysis-Exception-2025.pdf
- https://www.mlaw.gov.sg/public-consultation-on-artificial-intelligence-and-singapore-s-intellectual-property-regime/
- Singapore Copyright Act 2021